

고 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-100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28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

지번주소	도로명주소	폐지일	폐지 사유
신림동 475-56	신사로22길 8(신림동)	25. 8. 28.	건축물대장 말소
봉천동 100-422	행운7길 36(봉천동)	25. 8. 28.	건축물대장 말소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팀(☎02-879-6642, 6644)에 문의 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으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5-102호

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79-10, 16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』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28일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자율주택정비사업

나. 명 칭: 신림동 479-10, 16번지 자율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구역위치: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79-10, 16

나. 구역면적: 277.7m²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: 신림동 479-10,16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(대표 최진웅)

나. 주소: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16-6

4. 사업의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
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: 2025년 8월 28일

6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	건축면적 /건폐율(%)	연면적 /용적률(%)	높이 (층 수)	용도	세대수 /주차대수	비고
277.7m ²	152.08m ² / 54.76%	659.99m ² / 237.66%	최고 18.85m (지상6층)	도시형생활주택 (단지형다세대)	10세대 / 6대	-

7. 건축물 및 건축시설 공급계획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 기준) 공급세대 수(m ²)					그 외 (m ²)
	계	58.12	56.58	57.20	49.79	
계	10	4	4	1	1	-
토지등소유자	-	-	-	-	-	-
보류시설	-	-	-	-	-	-
일반분양	-	-	-	-	-	-
임대	10	4	4	1	1	-

8.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: 해당없음.

9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(☎02-879-6454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공 고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-1621호

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경우,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28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제 목 :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
2. 공고기간 : 2025. 8. 28.(목) ~ 2025. 9. 11.(목)

3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5. 9. 12.(금)

4. 처분 근거법규 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4항,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5. 공고대상